

전주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나5368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0. 11. 25 선고 2020나5368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6. 17 선고 2019가단666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

피고, 피항소인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성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20. 11. 11.

판결 선고2020. 11. 25.

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가단6661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하고, 개별적으로 '제1부동산' 등으로 지칭한다) 중 25/29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77. 4. 11. 접수 제11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B에게, 제2부동산 중, 피고 C, D는 각 3/1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E, F은 각 2/10 지분에 관하여, 전주지방법원 1977. 5. 20. 접수 제155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나상훈

판사오창민

판사조지환

별지